

# 「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1월 9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6년 1월 12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6년 1월 19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건강증진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, 격려금을 증액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인근지역과의 복지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

-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(안 제2조)  
(기존)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  
(개정) 시술을 받기 위한

○ 난임부부 격려금을 증액하고자 함(안 제5조)

(기존) 50만 원

(개정) 연 150만 원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최명순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.....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「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」 1부.

2. 「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# 「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
- 제안일자 : 2026. 01. 09.
- 회부일자 : 2026. 01. 12.
- 상정일자 : 2026. 01. 19.

### 2. 제안이유

-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, 격려금을 증액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인근지역과의 복지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-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(안 제2조)  
(기존)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  
(개정) 시술을 받기 위한

- 난임부부 격려금을 증액하고자 함(안 제5조)

(기존) 50만 원

(개정) 연 150만 원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 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「저출산·고령화사회 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난임부부 시술 의료기관 부재로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난임부부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, 난임 극복을 위한 의지를 격려하여 난임 치료가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#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2조제3호 난임부부 격려금 정의를 인공 또는 체외수정 시

술을 기존 “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” 에서 “받기 위한” 으로 규정함.

- 안 제5조제2항 난임부부 격려금을 기존 “50만 원” 에서 “연 150만 원” 으로 규정함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2022년도부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이양되어 난임부부 검사비 지원, 교통비 지원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정책이 시행 중이며, 현재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은 도내 평창군을 포함한 3개의<sup>1)</sup>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- 난임 부부의 관외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격려금 지원을 증액함으로써 경제적·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고, 조례에 수반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협의를<sup>2)</sup> 거쳤으므로 행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며,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--

1) 영월군 : 난임 시술 1건당 교통비 30만원 지원(연간 최대 5회)

홍천군 : - 시술 당 최대 10만원(최대 5회/인)

- 시술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나, 시술의 중도포기 시 지원불가

2) 2025. 10. 23. 평창군 사회보장사업 신설·변경에 대한 협의 결과: **협의 완료**



## [변경] 평창군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(강원도 평창군)

검토결과	협의완료
필수 검토사항	○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<sup>3)</sup> 근거, 협의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'협의완료'

3) 「사회보장기본법」

제26조(협의 및 조정)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, 기존 제도와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,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## □ 모자보건법

**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난임·유산·사산 극복 지원사업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, 유산·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5. 23., 2015. 12. 22., 2024. 1. 2.>

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<신설 2015. 12. 22., 2024. 2. 6.>

1.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. 이 경우 「한의약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(이하 “한방난임치료”라 한다)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.
2.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
3.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 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**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

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5. 23.>

## □ 지방자치법

**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 8. 8., 2024. 1. 9.>

### 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~ 차. (생략)

#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2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1. 9.

제 출 자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난임부부 격려금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, 격려금을 증액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인근지역과의 복지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가.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. : 안 제2조

(기존)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

(개정) 시술을 받기 위한

나. 난임부부 격려금을 증액하고자 함 : 안 제5조

(기존) 50만 원

(개정) 연 150만 원

## 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 제10조

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당초예산 10,000천 편성, 1차 추가경정예산 15,000천원 추가편성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5. 11. 19. ~ 2025. 12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5-1652호, 건강증진과-13974(2025. 11. 18.)호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18087(2025. 11. 17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18087(2025. 11. 17.)호]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41307(2025. 11. 11.)호]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9716(2025. 12. 15.)호]

6)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229(2026. 1. 5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”을 “**받기 위한**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50만 원”을 “**연 150만 원**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 관계 법령 발췌

##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(법률 제20112호)

**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

## 모자보건법(법률 제20879호)

**제11조(난임·유산·사산 극복 지원사업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, 유산·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 비용추계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: 난임부부 격려금을 증액하고자 함.

나. 관련 조문: 조례안 제5조(난임부부 격려금 지원)

## 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(단위: 건)

구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	68	78	83	90	90

나. 추계 결과

(단위: 천원)

난임시술 교통비	2024년 (7.1. 시행)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
지원금액 변경 전	2,300	4,500	9,000	9,000	9,000
지원금액 변경			25,000	25,000	25,000

### ※ 산출기초

- 변경 전  $90\text{건} \times 100,000\text{원} = 9,000\text{천원}$

- 변경  $70\text{건} \times 300,000\text{원(서울·강기도등 의료기관 시술)} + 20\text{건} \times 200,000\text{원(강원도 의료기관 시술)} = 25,000\text{천원}$

다. 재원조달 방안: 해당년도 예산 편성(균비)

※ 2026년 당초예산: 10,000천원

※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 15,000천원 증액

## 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건강증진과 김효진
연락처	(033) 330 - 4880

# 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6년)	2차년도 (2027년)	3차년도 (2028년)	4차년도 (2029년)	5차년도 (2030년)	계
세 입	해	당	없	음		
세 출	25,000	25,000	25,000	25,000	25,000	125,000
난임시술 교통비 지원	25,000	25,000	25,000	25,000	25,000	125,000
재원 조달	25,000	25,000	25,000	25,000	25,000	125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25,000	25,000	25,000	25,000	125,000
	지방세	25,000	25,000	25,000	25,000	125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민간자본						
해외자본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